



제431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등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2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3
2.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6
3.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10
4. 개정안 부칙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7.

3. 회부연월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u>5년</u>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u>3년</u>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 이유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등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¹⁾,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²⁾.

즉, 현실적인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해야만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예방된다고 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전에 재설계가 반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부산시교육청·대구시교육청도 유사한 사유를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u> <u>②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념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로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개정안과 유사한 조문들이지만, 개정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직접 법률에서 몇 월 며칠로 기념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기념일 지정기준 중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UNESCO에서 ‘학교폭력 및 괴롭힘 반대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11월 첫째 목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이 학교폭력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대구시교육청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예방의 날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 문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u>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u>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u>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결핵예방법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u>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u>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u>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u>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12조³⁾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또한,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및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를 통해 피해학생 등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4)(장애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생의 보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제1항5)(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을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다만, 전문가 등 의견 청취가 임의규정인 관계로 장애학생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은 장애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제13조제5항⁶⁾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관련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보장받을 수 있음.

다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현행법 제13조제5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제16조의2제2항(장애학생의 보호)은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임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사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히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⁷⁾

□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없다는 의견임.

7)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 p. 84

【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 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1)에서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및 기본계획과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개정규정을 법 시행 시 심의 중인 학교폭력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심의가 진행된 사건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후 심의를 실시하는 학교폭력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 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u>당시 심의 중인 학교폭력사건</u> <u>에 대해서도</u> 적용한다.	제3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 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u>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사건</u> <u>부터</u> 적용한다.
--	---

문 의 처
02)6788-5187